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본 특수조건은 과업지시서나 다른 계약조건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조(선금급) ① 공사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선금급 지급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현금이나 보증서(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나 정기예금증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보증 또는 보험기간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text{선금정산액} = \text{선금액} \times \frac{\text{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text{계약금액}}$$

- ④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학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⑥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공사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⑦ 기타 선금급에 관한 사항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제3조 (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발굴물의 처리) ① 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권,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한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① 계약완료 후에라도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방이 수행한 과업조사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조(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과업변경으로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과업의 변경량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상대방이 증액을 포기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경비의 정산) ① “경비” 항목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일 10일전까지 집행근거를 제출한다.

제8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전 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만 1년간 본 과업의 하자 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일반용역을 제외한 다른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율을 따름)을 준공검사 후 대금청구시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현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담보 보증금의 납

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하자보완책임기간의 도래전이라도 공사가 인정할 때에는 보완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탁시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며, 용역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승인할 때에는 당해 위탁용역의 성질 및 난이도, 위탁계약 체결방법 및 계약상대자와 위탁시행자의 의견을 참작, 심사하여 위탁계약을 불승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승인한 위탁용역에 있어서 당해 위탁시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위탁시행을 중지시키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대책) ① 계약상대방은 용역수행에 있어 국가보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또는 용역감독관의 지시 및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시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방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용역과업 수행중이거나 과업수행 완료 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방이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 역시 계약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가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방에게 있고 어떠한 불이익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제2항 및 제3항을 준수토록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공사가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과업지시서 등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1조(노임지급) 공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순응하지 않

을 경우 수요기관은 당해 용역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쟁 및 관할법원) ①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최종중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모든 중재절차는 한국어로 집행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그러한 중재판정은 집행판결에 의하여 개시되고 서울중앙지방방원에 의하여 집행된다.

제13조(용역장소) 본 용역의 수행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국가로 하되, 필요시 발주관서의 국가에서 수행할 수 있다.